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칠성,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개정('23. 9. 22.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청년 의무 위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약칭 등 일부 조문의 수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기본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적용을 제외함(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을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시”를 “시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및”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 시와”를 “따라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 할”을 “위촉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10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달성하는데”를 “달성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여부”를 “연장 여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소속</u> ----- ----- ----- <u>필요한</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총괄부서”란 <u>서울시</u>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시 소속</u>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① <u>시장 및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u>(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p>	<p>제3조(기본원칙) ① <u>서울특별시 시장,</u> ----- ----- ----- ----- ----- -----</p>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
----- 따라 시,-----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

-----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요건-----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3. (생략)

④ (생략)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③ -----

--- 위촉할 -----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정책을 주로 다

<신 설>

⑥ ~ ⑧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
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
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

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원회로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
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
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
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
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
례」 제49조-----

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회의개
최-----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달성
하는 데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연장 여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정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